**한국디지털인증협회 참여의향서**

**(Non-binding Letter of Intent)**

OOOO과 한국디지털인증협회는 개인정보관리 및 디지털 신원인증을 위한 디지털인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**제1조 (당사자)**

OOOO(이하 “\_\_\_\_\_\_\_\_”)은 (주소 : OOOO) 디지털인증 서비스를 제공/사용하는 회사이며, 한국디지털인증협회(이하 “협회”)는 (주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 우신빌딩 15층) 디지털인증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.

**제2조 (목적)**

본 의향서(이하 “LOI”)는, “\_\_\_\_\_\_\_\_” 가 개인정보관리 및 디지털인증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“협회” 의 기본적인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, 당사자들 간의 업무협력촉진과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향후 정회원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.

**제3조 (협력 내용)**

1. 당사자들은 글로벌 디지털인증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구축하는 업무에 상호 협의 및 협력하기로 한다.
2. 당사자들은 타 국가, 지역 및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조직, 기관 및 단체와 소통하는 업무에 협력하기로 한다.

**제4조 (효력)**

1. 본 LOI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단 본 LOI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업무협력에 대한 참여의향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.
2. 서명한 날로부터 LOI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은 시작되며, 차후 언제든지 참여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프리미엄 회원 신청에 대해 당사자들 간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.
3. 당사자들은 LOI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각자의 비용으로 적절한 인재, 자원 및 지원을 제공한다.

**제5조 (비밀유지)**

1. 당사자들은 LOI 체결에 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.
2. 단, 상대방에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LOI내용 또는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, 공유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된다.
3. 교환된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자들 간의 활동 및 업무는 기밀정보로 간주되며, 기밀정보는 LOI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.

**제6조(기타)**

당사자들은 상기 내용은 공동 협력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가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상호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.

**2022년 월 일**

**회사(단체)명 :**

**대표자 : (인)**

**(사)한국디지털인증협회 회장 귀하**